

NEWSLETTER 988

April 26, 2024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혼재 규정 일원화 및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 -

관세청에서는 기존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된 규정을 고시로 통합·일원화하고,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용어·서식을 정비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된 규정을 고시로 통합·일원화
- 원산지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국내생산물품 관련 내용 추가)
-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율 확대, 현지시정 허용사유 추가,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크기 통일, 의견 제출기간 연장 등)
- 수요자 편의를 위한 용어·서식 정비

II. 주요 내용

1. 유사 조문 통합(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고시, 훈령, 지침에 각각 혼재된 유사한 조문을 고시로 통합*
 - *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조치사항이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고시로 통합
 - ※ 세부적인 통합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 보세구역반입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32조, 별지13, 별지14)
- 시정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2조, 제33조, 별지6, 별지7)
- 과징금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36조)
 - 과징금부과기준을 물품별로 구분하여, 공산품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시행령을 인용하여 [별표13]으로 통합
 - 과징금부과절차 관련된 종전고시 19조·19조의2, 종전훈령 22조~24조, 재재지침 9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36조③~⑧항)
- 과태료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제37조)
 - 과태료부과 관련 종전고시 19조의2·20조의2, 종전훈령 25조~28조, 제재지침 11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제37조)

- 고시, 훈령, 지침에 산재된 교육명령 규정을 개정고시에 통합(제38조)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명령 관련 종전고시 19조의3, 종전훈령 28조의3, 제재지침 12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제38조)
 - ※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2. 조문 구분 체계 조정

- 조문의 수에 비해 구분 단위가 많고 체계가 비효율적이므로, 장(章) 구분은 존치하고 절(節) 구분은 삭제
 - ※ 1장, 2장 1절·2절·3절·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3. 조문 및 별지 서식 재배열(제10조 등)

-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조문배치 순서를 조정하고, 해당 조문 관련 별표·별지 서식 순서 조정
 - ※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4. 원산지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국내생산물품 추가) (2·13·23조)

-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정의 추가(제2조제12호)
 - ※ 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인용
- ‘국내생산물품’ 용어의 정의 신설(제2조제13호)
 - ※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등) 인용
- 조사대상* 확대, 조사수행** 방식 구체화(15조, 19조)
 - * (대상) 조사대상에 수출입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 추가(15조제1호), 조사장소에 수출입업자 사업장 외에 국내생산자 사업장 추가(19조①항)
 - ** (방식) 생선품목 및 생산시설 확인 추가(23조①항), 방문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 서면조사는 자료를 받아 세관사무실에서 조사(23조⑥항)
- 정보범위확대(‘원산지증빙서류’ → ‘원산지증빙자료’) (2조10호, 31조2항)
 -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의2) 개정으로 ‘서류’→‘자료’로 용어 변경되었으며, ‘자료’는 서류, 전산 등 모든 형태의 매체를 포함

5.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크기 명확화(제3조)

- 농수산물은 표시면적에 따라 크기(8·12·20포인트)를 규정하고, 그 가공품은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표시크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3]의 기준과 맞춤

6. 원산지표시상태 입력 규정 흡수 통합(제12조)

- 통관부서의 수입검사과정에서 원산지표시상태 이미지 촬영과 관련된 내용을 제재지침 제4조로부터 흡수하여 본 개정고시에 통합(제12조)

7. 업무범위 규정 흡수 통합(제14조)

- 통관, 심사, 범칙조사 각 부서별 업무범위 관련 내용을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제재지침’) 제3조로부터 흡수하여 본 개정고시에 통합(제14조)

8. 시스템 명칭 수정(제2조제19호,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서 원산지표시단속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명칭을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으로 수정

9. 용어 수정(28·29·30·35조)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제28조)
 -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2조 ‘원산지 판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절 ‘원산지 판정’, 종전고시 제22조 ‘원산지 판정’은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의미하나, 본 개정고시 제12조의 위반유형별 ‘판정’ 예시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등 위반유형을 뜻하므로 혼선을 줄이고자 ‘유형’으로 용어 수정
- ‘조사의뢰’를 ‘범칙조사의뢰’로 수정(29조, 30조, 35조)
 - ※ 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검사’ → ‘조사’로 변경되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 → 범칙조사, 조사의뢰 → 범칙조사의뢰(관세법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범칙조사’ 용어를 인용)

10. 불명확한 예시 삭제(제4조)

-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하는 예시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예시 삭제(제4조 제4항)
 - ※ 거래·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 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생략가능 → 예시 삭제

11. 원산지 국가명 표기 명확화(제7조)

- 널리 쓰이는 원산지국명 표기 예시 중에서 영국의 지역 명칭(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을 삭제(제7조제4호)
 - ※ 대외무역관리규정 76조⑥항5호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

12. 제도개선 반영하여 문구 추가·수정(26·32·50조, 별지16, 별지23)

- 원산지표시 조사직원 지정·변경할 때, 본청에 공문 보고하던 절차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개선(제26조제1항)
 - ※ 원산지표시 검사직원 지정방식 변경(공정무역심사팀-2052, '22.9.14 관련)
-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예외 조치로 현지시정할 수 있는 물품에 방진, 방습, 냉동 등 특수보관 필요 물품 추가(제32조제4항제3호 신설)
 - ※ 백신 등 초저온 특수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제도개선안 반영)

- 원산지표시 사전안내제도의 보고 절차를 시스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간소화(제50조제1항)
 - ※ 세관장 대면보고 절차를 시스템 등록 방식으로 간소화(자체제도개선)
-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에 이의제기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의견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문구 추가(별지 16호)
 - ※ 규제개혁과제 반영
-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에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부과·징수가 완료되므로 의견진술이 불가함을 추가안내(별지 23호)
 - ※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 반영

13. 인용 법령 명칭 수정(제5조, 제42조, 별지4호 등)

- 「식품위생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 「민원사무처리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별지4, 별지6, 별지 16, 별지19, 별지23, 별지24호, 별지27호, 별지34호)

14. 교육기관 변경사항 반영(제38조)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기관 변경사항 반영('24년이후)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 aT농수산물유통교육원

15. 원산지표시위반자 명단 공표 규정 신설(제39조)

- 원산지표시 위반자명단 공표권한이 산업부에서 관세청으로 위탁되어, 훈령의 관련 규정을 고시로 흡수 (훈령 28조의2 → 고시 39조)
 -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⑥항1의3호, 위반금액 10억원 이상 과징금 대상자

16.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을 확대(별표13)

- 시중유통물품 원산지표시 1차 위반 과징금 부과할 때, 현행 경감율 (30)을 중소기업에게는 법정 최대치인 50까지로 확대하여 자금 부담 완화(별표13)
 - ※ ① [근거] 과징금경감사유에 ‘중소기업여부’ 추가(대외무역법시행령 60조) <중전> 위반정도·횟수 등 → 중전 + 중소기업여부
 - ② [경감] 허위표시·손상 판매분 1차 위반에 대해 경감율 30 적용
 - 중소기업에게는 시행령 60조 경감율의 법정최대치 50까지 적용

17. 시정명령·과징금 의견제출기간 명확화(33조, 36조)

- 시정명령 의견제출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로 수정(33조⑥항)
- 과징금 의견제출기간을 ‘2주간’에서 ‘14일간’으로 수정(36조⑤항)
 - ※ 「행정절차법」21조③항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중전훈령 20조③항 시정명령은 ‘10일 이내’, 중전고시 19조②항 과징금은 ‘2주간’으로 다름 → ‘14일’로 명확화

18.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연장(제37조)

-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의견진술기간 보장(37조③항)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23.12.22) 사항 반영

19. 폐지규정, 경과조치 안내(부칙)

- 훈령·지침의 내용을 개정고시에 흡수·통합하고 폐지
- 농수산물가공품 표시크기 적용시점을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과 일치화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표시크기와 적용시점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와 일치시킴

III. 시행일

2024년 05월 (시행일자 미정)

I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I Contact



김승욱 관세사

T 02-6011-3046
E sokim@esein.co.kr



장수한 관세사

T 02-6011-3091
E shjang1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